

	갈등조정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8. 1. 23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의 학내 갈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·해소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, 그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갈등조정위원회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목포과학대학교에 갈등 조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1. 학내 갈등에 관한 사항
2. 반복 민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학내 갈등의 해소에 관한 사항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위원은 교원, 직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·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총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
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인원은 그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, 관련 업무 담당 교직원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갈등 조정·해소의 제한)위원회는 법률,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, 학칙, 그 밖의 학내 내규의 범위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소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.

제11조(수당 등)위원회에 출석한 교원·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. 1. 23일부터 시행한다.